

##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3. 20  
자치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3월 4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3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2002. 3. 19)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 가. 제안이유

-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경품권 추첨제도의 도입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돼지의 도축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추가로 유입되는 도축물량의 수수료 수입으로 도축업체의 시설투자 등 경영비용 보전
-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의 일부를 개정함

#### 나. 주요골자

##### 1.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신설(안 제14조의 3)

가. 대상세목(정기분)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나. 추첨시기 : 납기 익월 중

다. 대상자 : 납기 내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2. 도축세 세율을 부칙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 조정

가. 조례 본문 내용(안 제36조)

-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인증 획득 도축장에서 도살하는 소·돼지(안 부칙)

-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5
-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5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해수)

-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 기대 심리를 통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목표를 두고 시행코자 하나, 국민의 당연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경품제를 실시하는 것은 협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에 대하여 도축업체의 시설투자등 경영 비용 보전을 위한 도축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어 가능하고 바람직한 제도이겠으나, 특례 조항을 본문이 아닌 부칙에 기술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됨.
- 부칙이란, 본문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그리고 그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 특례 도축 세율을 본문에, 시행기한은 부칙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기술함이 법리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문에 제36조의1 조항을 신설하여,  
“제36조의1(특례세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획득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소, 돼지의 도축세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5
  - 돼지: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5 ”
- 부칙에는 본 특례 조항 시행 기한을 다음과 같이 기술  
“제36조의1 특례 세율은 200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 음